

(앞쪽)

제 호
심사관(심사위원회 위원) 증표
사 진 3cm×4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 영한 것)
성 명
고 용 노 동 부

60mm×90mm[백상지 150g/㎡]

(색상: 연노랑색)

(뒤쪽)

심사관(심사위원회 위원) 증표
소속/직위:
성 명:
생년월일:
위 사람은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5제4항·제77조의10제4항, 제94조제2항 및 제101조제7항에 따른 권한을 가진 심사관(심사위원회위원)임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
고용노동부장관 직인
○ 심사관(심사위원회 위원)의 권한 (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5제4항·제77조의10제4항, 제94조제2항 및 제101조제7항) 1.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.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.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것 4.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·종업원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